



## 비영리경제주체의 의의와 사례

2016.3.28 | 강세진\_새사연 이사 | wisemaninspace@daum.net

2016년은 새사연이 ‘새로운 사회를 바라는 평범한 생활인들의 생활과 의지를 모아’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창립된지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를 기념하여 사회적경제 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의 근간인 비영리, 비영리경제, 비영리경제주체에 대해서 짚어보았다.

### 비영리(非營利)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이하 사전)에 따르면 ‘영리(營利)란 재산상의 이익을 포함. 또는 그 이익(재산상 이익).’이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사전적으로 비영리란 ‘재산상의 이익을 피하지 않음.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없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재산상의 이익을 피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사전적 의미로 재산이란 ‘①재화와 자산을 통틀어 이르는 말. 개인, 단체,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가옥, 가구, 금전, 귀금속 따위의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 ②법률적으로 동산, 부동산, 기타 금전적 가치를 지니는 권리 및 의무의 총체. 적극적 재산인 자산 이외에 소극적 재산인 부채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고 정의된다. 그리고 이익이란 ‘①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보탬이 되는 것. ②경제학적으로는 일정 기간의 총수입에서 그것을 위하여 들인 비용을 뺀 차액.’이라고 정의된다.

한편 수입이란 ‘①돈이나 물품 따위를 거두어들임. 또는 그 돈이나 물품. ②경제학적으로는 개인, 국가, 단체 따위가 합법적으로 얻어 들이는 일정액의 금액.’을 말하며, 비용이란 ‘①어떤 일을 하는 데 드는 돈. ②경제학적으로는 기업에서 생산을 위하여 소비하는 원료비, 기계 설비비, 빌린 자본의 이자, 인건비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된다. 따라서 비영리를 법률적·경제학적으로 해석하자면 다음과 같다.

- 금전적 가치를 지니는 각종 권리를 늘리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
- 활동의 비용을 초과하는 수입을 올리는 것, 즉 이익을 높이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
- 수입을 위해 법정기준, 사회적 통념 등에 부합하는 인건비 등 정당한 비용을 치루거나 기부를 받는 합법적 경제활동이어야 한다.



위 내용 중 ‘의도하지 않는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영리로 경제활동을 하여도 수입이 비용에 비해서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의도하지 않았으므로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고 다시 경제활동의 밑천으로 삼는다는 점이 영리와 비영리의 차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합법적 경제활동’이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다. 비영리조직의 구성원은 자원봉사나 낮은 임금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성원들의 인건비를 정상적인 기준 미만으로 낮추거나 대가없이 착취한다면 정상적인 경제활동도 아닐 뿐더러 노동조건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비영리는 투자이익, 배당금 등 이윤을 제거하고 선의의 기부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달성하는 것이다. 조직원들의 경제적 불이익을 강요하는 활동은 엄밀하게는 비영리라고 할 수 없다.

## 영리포플리즘

정부정책을 살펴보다 보면 이상한 단어들을 종종 볼 수 있다. 관행적이거나 일반적으로 잘못 쓰이는 단어를 바로잡는 것에 오히려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기업형임대’처럼 편협한 사상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기업형임대라는 용어를 만들어내기 전에도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이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적지 않은 물량을 공급하여 왔음에도 애써 ‘기업형’이라는 단어를 ‘임대’에 갖다 붙인 이유는 ‘경제활동의 주체는 기업’이라는 편견이 반영된 결과이다.

기업이란 ‘영리를 얻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조직체.’라고 정의된다. 따라서 ‘기업형’이라고 얘기하고자 하는 본뜻은 ‘영리’에 있을 것이다. 경제활동은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라는 사상도 은연중에 내포되어 있다.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경제활동을 촉진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기업들이 임대사업으로 영리를 취할 수 있게 지원하고 규제도 풀어주면 주거문제도 해결하고 좋지 않겠는가.’라는 메시지가 ‘기업형임대’라는 용어에 담겨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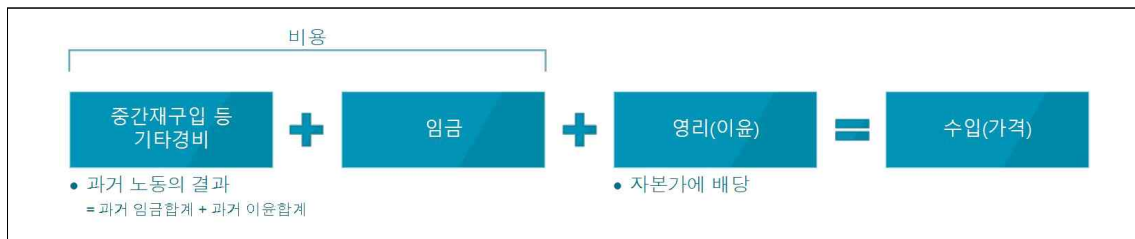
자본주의체제에서 영리와 비영리는 모두 경제활동이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모든 행위가 수입이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제활동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전체 경제에서 비영리가 차지하는 비중도 결코 작지 않다. 이론적으로는 동일한 수요가 발생한다면 비영리를 촉진하여도 영리를 촉진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오히려 돈으로 따지기 어려운 사회적 편익까지 고려한다면 비영리 쪽의 효과가 더욱 크다고 봐야한다. 그럼에도



경제활성화와 영리를 묶어버리면 경제주체 중에서 일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격이다.

영리와 관계가 높은 주체는 금융과 관련된 개인과 법인이다. 고전적 관점에서 마르크스가 지적한 자본가라고 봐도 큰 무리는 없고,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국부를 창출하는 데에 직접적인 기여가 없다고(비생산적이라고) 지적했던 이들도이다. 수입에서 비용을 제한 나머지가 영리이기 때문에 영리는 투자에 대한 배당으로 환원된다. ‘돈’만 쥐고 흔들면서 직접적인 생산이나 소비를 하지 않는 개인과 법인이 영리의 최종수혜자이다.

그림 1. 경제활동에 따른 수입(상품의 가격)의 구성



소비주체의 입장에서 영리는 가격을 올리는 요소이다. 생산이라는 것도 다양한 중간재를 소비하는 활동이므로 생산주체 입장에서도 지나친 이윤이 끼어 중간재의 가격이 높아지는 것이 이롭지 않다. 영리를 촉진하는 것은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망치는 것이다. 포퓰리즘이 실상과 다른 허구로 표를 구걸하는 기만이라면 영리활동을 장려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 딱 이에 해당한다.

경제활성화가 필요하다면 경제 전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주체의 처지가 개선되어야 한다. 그 방안 중 하나가 영리가 아니라 사회의 이익을 목적으로 두는 비영리를 촉진하는 것이다.

### 국부론이 꿈꾼, 비영리경제학

애덤 스미스는 가격이 오르는 것은 임금이 올라서가 아니라 자본가의 욕심에 따라 이윤이 오르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그래서 ‘정의롭고 올바른’ 상황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이윤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서 이윤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임금의 착취가 고조되었기에 마르크스의 비판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도덕감정론>, <국부론>의 내용을 보면 애덤 스미스 스스로도 저절로 ‘정의롭고 올바른’ 상황이 오기 어렵다고 여긴 듯하다. 다음은 <국부론><sup>1)</sup>에 담겨있는 자본가에 대한 생각이다.

고용주들은 노동임금을 현재의 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않기 위하여, 언제 어디서나 일종의 암묵

1) 김수행 역(2007), 「국부론 상·하」



적인, 그러면서도 한결같은 연합을 지속적으로 맺고 있다. ... 그러나 노동자들의 단합은 ...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한다. 부분적으로는 치안판사의 개입 때문에, ... 부분적으로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당장의 생존을 위해 굴복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 등의 이유 때문에 ... 투쟁 주동자의 처벌과 파멸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끝나고 마는 것이 보통이다.(87-89)

상인과 공장주 두 계급은 ... 사회의 이익보다는 자기 계급의 이익을 더욱 고려하고 있다. ... 따라서 이러한 계급이 제안하는 어떤 새로운 상업적 법률·규제들에 대해서는 항상 큰 경계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한다. ...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이익이 결코 공공의 이익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계급이자 사회를 기만하고 심지어 억압하는 것이 그들의 이익이 되며 따라서 수많은 기회에 사회를 기만하고 억압한 적이 있는 계급으로부터 나온 제안이기 때문이다.(322-323)

흥미롭게도, 주류경제학자들은 애덤 스미스가 자본가의 이윤 추구에 대해 철학적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주장하지만, 위 글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국부론>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인도회사나 아메리카 식민지와 무역을 독점하는 무역상을 비판하면서 독점의 폐해를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온갖 특혜를 받고 있는 재벌들의 국가경제에 대한 폐해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모든 개인과 기업은 정의의 원칙을 지키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도덕감정론>의 내용을 보면 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개인이나 기업의 행동에 '동감'을 느끼지 못하면 그 행동은 '정의롭지 못한 행동'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원칙은 '법률'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금융과 같이 비생산적인 분야보다 노동을 통해 실질적인 국부를 증대시키는 생산적인 분야에 자본이 투자되어야 사회의 이익이 증가한다고 보았다. 넷째, 공평한 조세의 원칙을 천명하면서 소득의 크기에 따라 세금을 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섯째, 정부가 재산이 많은 계급(기득권)의 요구를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으므로 정책을 주의 깊게 검토하여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김수행, 2013).

<국부론>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아마 '보이지 않는 손'일 것이다. 하지만 이 책에서 이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번뿐이다. 게다가 그 의미도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결이 다르다.

각 개인이 최선을 다해 ... 노동생산물이 최대의 가치를 갖도록 노동을 지휘하는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다. 이 경우 ...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서, ... 그 자신이 진실로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려고 의도하는 경우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그것을 증진시키는 경우가 흔히 있다.(552-553)

특혜를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 모든 국가의 제도가 완전히 철폐되면, 분명하고 단순한 자연적 자유의 제도가 스스로 확립된다. 이 제도 하에서 모든 사람은 '정의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 완전히 자유롭게 자기의 방식대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근면과 자본을 바탕으로 다른 누구와도 그리고 다른 어느 계급과도 완전히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다.(848)

앞서 인용한 내용을 포함하여 책 전체의 전후 문맥을 고려할 때 위 구절은 중상주의에





경도된 절대왕정이 동인도회사 등 독점자본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여러 특혜와 규제를 철폐하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위에서 얘기하는 ‘자신의 이익’은 ‘정의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조건에서 추구하는 것이므로 자본가의 끝 모를 욕심을 채우는 이윤이 될 수 없다. 노동이나 사업이 추구하는 기본목적과 본질을 잊고 오직 돈만 바라보는 것이 어찌 ‘자신의 이익’, 더 나아가 사회전체의 이익이 될 수 있겠는가.

노동임금과 자본가의 이윤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재 상황을 본다면 애덤 스미스는 어떤 입장을 취할까. <국부론>과 <도덕감정론>의 주장을 고려하면, 자본가의 과도한 욕심을 제어하고 올바른 노동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즉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올바른 노동임금에 대한 그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사람이 항상 자신의 노동에 의해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면, 그의 임금은 적어도 그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충분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임금은 이것보다 좀 더 많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자기 가족을 부양할 수 없을 것이며, 노동자 계급은 제1세대를 넘어 존속할 수 없을 것이다.(89)

250년 전에 이미 최저임금도 아니고 생활임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국부론>은 국민 모두가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경제를 연구한 성과이지, 자본가들의 무한한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읽는다면, 이 책이 결코 복지국가를 비판하는 신자유주의의 기본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유를 하자면 애덤 스미스는 스웨덴 사민주의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일삼으며 군산복합체의 배를 불리는 미공화당 정부 또는 경제활성화를 빌미로 대기업의 온갖 편의를 봐주면서 경제를 망가뜨리는 신자유주의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한 것이다.

저서 곳곳에 보이는 여러 주장을 종합해보면 그 스스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서, 정의의 원칙에 따라 정경유착 등 부조리를 걷어내면 자연스럽게 등장할 것이라 기대되는, 이윤이 적정 수준으로 최소화되는 ‘비영리경제’를 상상했던 것이다.

### 떠오르는 비영리경제

정의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 완전히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에서 영리기업과 비영리경제주체가 경쟁을 한다면 누가 이길까. 영리기업이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된다면 그 이유가 정의로운 조건인지 따져보자.

노동탄압에 대한 공권력의 비호가 없어서 생활임금을 반드시 지불해야하고, 기업의 이익보다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소비자보호원의 강력한 감시에다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하여 갑의 횡포를 철저히 방지하고 독과점을 엄단하는, 사법질서



가 확고하여 강자가 약자를 돈과 권력으로 억박지르는 것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사회를 상상해보자. 이윤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순간 가격경쟁력을 잃게 되니 노동과 사업의 목적·본질이 아니라 돈만 추구하는 영리기업이 버틸 재간이 없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양보한다면 모를까, 모든 자본가는 자신의 노동에 비례하는 생활임금을 넘어서는 이윤을 추구하기 어렵게 된다.

4~5년마다 끊임없이 기회는 주어지지만, 위와 같은 사회가 쉽게 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①투자자에게 꼬박꼬박 배당을 해 줄 필요가 없고, ②이윤을 남기지 않으니 세금혜택도 많고, ③사업의 취지에 공감하는 수많은 기부자 및 자원봉사자와 ④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기꺼이 생활임금만을 받고 일할 각오가 되어 있는 유능한 인재들과 ⑤영리기업의 상품보다는 사회적 이익에 목적을 둔 상품을 소비하고자 하는 수요와 ⑥크라라우드펀딩, 사회효과연계금융(social impact bond), 지역공동체 자원 등 우호적 자본이 나날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비영리경제주체의 경쟁력 또한 쑥쑥 커갈 수 있다(Maclurcan and Hinton, 2013). 다음은 영리와 맞서는 비영리의 사례이다.

### 리눅스(Linux)

IT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리눅스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시리즈가 컴퓨터 운영체제의 대표적인 영리 상품이라면, 그에 맞서는 비영리 상품이 리눅스이다. 구글이 무료로 배포하는 스마트기기용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도 리눅스의 일종이다.

1991년, 헬싱키 공대 학생이던 리누스 토발즈에 의해 개발된 후 25년이 흐른 지금 서버분야와 스마트기기분야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발전이 기대되는 사물인터넷분야의 기반이 될 것으로도 예상된다. 현재처럼 인터넷이 활성화된 데에 리눅스를 빼놓고 이야기 할 수 없다.

리눅스는 지금도 전 세계에서 수많은 개발자들이 자발적으로 개선을 거듭하고 있다. 아마도 역사상 가장 많은 인력이 투입된, 가장 큰 프로젝트의 사례로 남을 것이다.

### 위키백과(wikipedia)

위키미디어 재단이 운영하는 위키위키(wikiwiki)를 이용한 백과사전 프로젝트이다. 위키위키는 하와이어로 ‘빨리’라는 말인데 임의의 문서의 편집 권한이 임의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웹사이트들을 뜻한다. 글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의 잠재력을 짐작하기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실제 인터넷 상에서 위키백과 및 자유형 위키의 확장속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위키의 ‘누구나 쓸 수 있고, 수정 가능하다’는 특성을 이용해서 대규모 백과사전을 만드는 것이므로 일찍이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방대한 백과사전이 만들어지고 있다. 위키 낱말사전, 위키문헌, 위키책 등의 연계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물론 누구나 쓸 수 있다는 특성으로 인해 정보의 신뢰성 논란이 있는데, 위키백과에서 ‘위키백과’를 검색했을 때 이런 논란이 있다는 내용까지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스스로’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는 있겠으나, 권위 있는 학자라고 꼭 진실만을 말한다는 보장이 없으니 위키백과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공개되고 쉽게 의견을 남길 수 있다는 인터넷의 특성으로 인해 잘못된 정보에 대한 자정 활동도 쉽게 전개된다. 무엇보다도 엘리트주의와 교조적으로 지식을 받아들이려는 풍토에서 집단지성의 형태로 사회가 변화되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해야 하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여겨진다.

### 카피레프트(copyleft)

개별 사업(프로젝트)은 아니지만 대표적 비영리 운동 사례로서 카피레프트를 거론할 수 있다. 카피레프트는 독점적 의미의 저작권(copyright)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저작권이라는 것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지식이나 정보에 사용 제한을 가하는 것이라면, 카피레프트는 저작권을 기반으로 한 정보의 자유로운 공유를 표방하는 것이다. 지식과 정보가 소수에 독점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철학을 반영한다.

그림 2. CCL(creative commons license) 종류

LICENSES	TERMS	
	<b>Attribution</b> BY Others can copy, distribute, display, perform and remix your work if they credit your name as requested by you	▶ 저작자 표시 : 저작물을 사용할 때 원저작자를 꼭 표기해야 한다.
	<b>No Derivative Works</b> ND Others can only copy, distribute, display or perform verbatim copies of your work	▶ 변경금지 : 저작물을 변경할 수 없다.
	<b>Share Alike</b> SA Others can distribute your work only under a license identical to the one you have chosen for your work	▶ 동일조건 변경 허락 : 2차 저작물을 만들 때 그 저작물에도 원저작물과 같은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
	<b>Non-Commercial</b> NC Others can copy, distribute, display, perform or remix your work but for non-commercial purposes only.	▶ 비영리 :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자료 : <http://education-copyright.org/creative-commons/>

실무적으로 카피레프트는 저작권 규정에 따라 사용조건을 정리하는 것으로서 CCL(creative commons creative license) 표기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그림 2). 보통



저작물을 소유한 각 사람에게 ①저작물을 연구하고 사용하는 자유, ②저작물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쓰고 복사하는 자유, ③저작물을 수정하는 자유, ④수정된 저작물, 즉 2차 저작물을 배포할 자유 등을 포함하여 저자와 동일한 자유를 제공한다. 앞서 언급한 리눅스와 위키백과도 이런 철학에 따라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다.

##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투자기관

최근 공공의 행태나 정책을 보면 인정하기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투자기관은 모두 비영리경제주체이다. 애덤 스미스와 같은 고전적 경제학자들은 왕권신수설을 주장하며 맘대로 횡포를 부리는 절대왕정에 진저리를 쳤기 때문에 공공과 경제주체를 다르다고 판단하고, 정부가 최대한 아무 것도 하지 말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동일한 수요를 발생시키는 공공의 활동은 그와 동일한 수요를 발생시키는 일반 경제주체와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같다.

임대주택을 정부투자기관에서 짓던 민간개발업자가 짓던, 동일한 주택을 공급한다면 전체 비용은 같다. 다만 관련 주체별로 얼마나 비용을 지불하는가가 달라질 뿐이다. 일반적으로 공공의 활동에 대한 비용은 좀 더 부유한 계층이 더 많이 부담하여 누진적인 특성을 띠지만,<sup>2)</sup> 영리적 경제주체의 활동에 대한 비용은 소비자가 거의 전부 부담하게 되어 결국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은 부담을 지는 역진적인 특성을 띠게 된다. 쌀 한가마니의 가격은 재벌이든 가난하든 동일하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는 VIP고객에게 보너스를 두둑하게 챙겨주니 돈 많은 계층이 더 이득을 보게 된다.

## 교육기관

학교의 경우 <사립학교법[2016.2.3. 개정]>에 비영리경제주체만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 조항들을 살펴보면 비영리로 운영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6조(사업) ①항>의 규정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收益事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영리를 취할 수 있다고 오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같은 법 <제46조(수익사업의 정지명령)>에 따르면 “관할청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학교법인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학교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당해 학교법인이

2) 신자유주의적 특성을 많이 띠는 정부일수록 부자감세, 복지축소 등으로 이런 경향이 줄어든다.





당해 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2. 당해 사업을 계속함이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있을 때”라고 되어 있으므로 학교의 모든 수익은 교육에 쓰여 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학교의 비영리운영 원칙이 맘에 들지 않았는지 2008년 10월 14일에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교육·의료산업 등을 핵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관련된 행정규제와 제도를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제189조의6(국제학교 설립자격)>을 신설하여 “이 법, 다른 법령 또는 외국의 법령(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상당 하는 외국의 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법인”이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법인, 즉 비영리법인이 아니라도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같은 법에 <제189조의12(회계처리 등)>을 신설하여 “③ 국제학교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잉여금은 학교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학사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학교법인의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고 ‘과실송금’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업료 등을 건어서 생긴 수입을 설립자나 투자자가 챙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 하였다.<sup>3)4)</sup>

## 의료기관

비싼 진료비를 보면서 동의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병원도 비영리경제주체이다. <의료법[2015.12.29. 개정] 제33조(개설 등) ②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 비영리법인. 5. ... 준정부기관, ... 지방의료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국가나 비영리법인이 비영리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의사 등의 의료인은 영리를 추구할 수도 있다. 의료행위에 따른 수입은 진료비용에서 발생하는데 <국민건강보험법[2016.2.3. 개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급여대상)인 진료비는 정부에서 정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801536. 제안일자 2008-10-16. 정부 제안. (의안바로가기 <http://goo.gl/DCFKSb>)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4) 현행(2015년 12월 29일 개정) 법률에 설립자격은 반영이 되어 있으며(제225조), 과실송금에 관한 규정은 반발이 만만치 않아서 아직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제231조).



지·게시하고 그것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의료법 제45조). 이론적으로는 급여대상인 진료의 범위가 좁을수록 의료인의 영리행위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①항>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 7.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 9. 제23조의2를 위반<sup>5)</sup>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법 시행령[2015.12.22. 개정] 제32조(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①항>에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4. 불필요한 검사·투약(投藥)·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5. 전공의(專攻醫)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6.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7. 자신이 처방전을 발급하여 준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나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라고 규정하여 의료인의 영리행위에 대해 제한하고 있다.

한편 <의료법 제49조(부대사업) ①항>에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2.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3.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4. ...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5. ...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6.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 7.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규정되어 있어서 의료법인의 경우에도 ‘부대사업’을 명분으로 영리를 취할 우려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의 회계를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하므로 의료행위를 통한 직접적인 영리추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 영리병원의 등장

경우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의료인이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럼에도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공식적인 물꼬를 튼 것이 2005년 11월 2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다. <법안 제190조(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

5) 제약회사·의료기기 회사 등으로부터 부당한 경제적 이익의 취득.



례) ①항>에 “... 외국인...이 설립하여 제주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자치도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고 함으로써 영리법인이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열고, <같은 조 ④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에 의한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진료비를 마음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당연히 국민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의료인이 직접 의료기관을 설립하지 않아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법안 제196조), 외국인 환자를 호객할 수 있도록 하고(법안 제197조), 부대사업의 범위를 도지사가 달리 정할 수 있게 하고(법안 제198조), 돈벌이를 위한 의료관광에 대해 공공의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법안 제199조) 등 의료를 통한 영리행위를 전부 허용하고 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sup>6)</sup> 법안의 내용은 모두 현행법에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주장의 결과로 2015년 12월 18일 중국계 자본이 투입되는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이 승인되었다. 현재는 제주도에 한정된 것이지만, 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할 때 영리병원에 대한 홍보와 찬사가 쏟아지면서 긍정적으로 여론이 전환되면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전면적인 규제완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할지는 미국의 의료시스템 붕괴를 보면서 상상할 수 있다.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이하 새사연)은 비영리연구기관이다. 2006년 2월의 창립발기인 대회에서 구성원들의 의지를 모은 출사표를 간단히 돌아보면 “▶ 학자들만의 연구소가 아닌, ‘생활 현장성을 구조적으로 보장’하는 연구원. ▶ 일부 인사나 특정 세력에 기댄 연구소가 아닌, ‘새로운 사회를 바라는 평범한 생활인들의 생활과 의지를 모아’ 설립한 연구원. ▶ 아마추어적 주의주장을 펴는 연구소가 아닌, ‘기업연구소와도 경쟁해 이길 수 있는’ 짜임새 있고 역동적인 연구원. ▶ 특정인, 특정 파벌을 대표하는 연구소가 아닌, ‘국민 속에서 새로운 사회를 바라는 모든 이들이 공감하고 합류할 수 있는’ 연구원. ▶ 비판적 문제제기를 하는 연구소가 아닌, ‘책임 있게 근본적 대안을 찾고, 이를 국민과 공유하여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갈’ 연구원.”을 표방하였다.

위의 목표를 고려하면 새사연이 당연히 비영리를 표방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윤을 얻으려면 기본적으로 고객(비용의 지불자)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하므로 일부 인사나 특정 세력의 영향을 배제하기 어렵고, 결국 새사연이 비판하는 ‘기업연구소’처럼 특정인, 특정 파벌을 대표하게 될 것이다.

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173417. 제안일자 2005-11-22. 정부 제안. (의안바로가기 <http://goo.gl/MaE4O3>)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새사연도 경제주체이므로 정상적인 경영·재무구조를 갖춰야 한다. 창립발기인대회 자료집의 내용을 보면 “▶법인회원이 재정담당자이며, 운영요원이다. ▶법인회원이 총회에 참여하여 사업방향을 의결한다. ▶법인회원이 납부한 회비로 총 재정의 50% 이상을 충당한다. ▶법인회원이 모두 현장연구원으로서 활동한다.”고 경영과 재정에 대해 계획되어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새사연이 선택한 경제주체의 형태가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 비영리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경제활동을 비롯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의 주체는 살아있는 사람(인; 人)이다(민법 제3조). 즉 모든 계약의 주체는 사람이다. 하지만 사람만 계약의 주체로 할 경우 많은 경제활동에서 불편함이 야기된다. 여러 명이 모여서 사업을 벌이면서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사람(자연인)만 계약의 주체가 된다면 공동으로 소유할 재산에 대해서 매각자와 어떻게 계약을 할 것인지 복잡해진다. 한 사람이 대표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면 다시 동업자들과 그 재산의 권리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따져야 한다. 아니면 각자가 해당 재산을 쪼개어 매각자와 각각 매매계약을 맺어야 한다. 쉽게 쪼갤 수 있는 재산이면 모를까 그 과정도 복잡하거나 동업자 각자의 재산을 어떻게 공동사업에 활용할 것인지도 일일이 협의를 하고 서로 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안한 것이 법인(法人)이다. 법으로써 가상의 권리 및 의무의 주체를 생성한다는 개념인데, 모임이나 단체에 법인격(法人格)을 부여한다고 표현한다.

〈민법 제3장 법인〉의 규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람에게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민법 제31조). 학술, 종교, 자선 등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사원의 모임) 또는 재단(재산의 모임)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할 수 있다(민법 제32조).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민법 제34조). 따라서 법인은 이사나 대표의 직무로 인해 발생한 타인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사나 대표는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하며,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한 타인의 손해에 대해서는 그 사항을 의결하여 찬성하거나 집행한 사원, 이사나 대표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35조). 영리법인으로 할 경우에는 상사회사와 관련된 규정을 따라야 한다(민법 제39조).





## 법인의 설립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래 권리와 의무를 지니는 존재이지만, 법인의 실체는 합법적 계약의 뭉치이다. 그래서 정관(사원간, 사단과 주무관청간 계약)이 법인의 시작이자 끝이다. 사단법인의 정관에는 ①목적, ②명칭, ③사무소의 소재지, ④자산에 대한 규정, ⑤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⑥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⑦존립시기나 해산사유에 관한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민법 제40조),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의 모임이 아니므로 ①~⑤까지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민법 제43조). 법인의 정관은 설립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하며(민법 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회에서 변경한다(민법 제42조).

주무관청이 정관에 따른 법인의 사업 등을 검토한 후 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법인의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등기의 내용은 ①목적, ②명칭, ③사무소, ④설립허가의 연월일, ⑤존립시기나 해산이유, ⑥자산의 총액, ⑦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⑧이사의 성명, 주소, ⑨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이다(민법 제49조). 또한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와 주사무소소재지 모두에 등기하며(민법 제50조), 사무소를 이전하거나 이사의 변동, 이사의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등 등기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3주 이내에 변경 사항을 등기 하여야 한다(민법 제51조~제52조의2). 법인은 등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53조).

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년 3월내에, 또는 사업연도를 정한 경우에는 그 연도말에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변경이 있을 때에는 기재하여야 한다(민법 제55조).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민법 제56조).

## 법인의 기관

법인은 사무집행의 주체로서 이사를 두어야 한다. 정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민법 제57조, 제58조).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하지만 정관의 취지를 따라야 하며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민법 제114조~제136조)을 준용하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59조, 제60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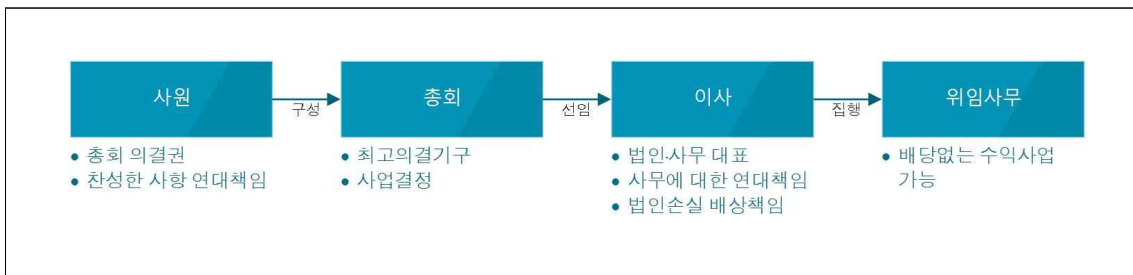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해 직무를 행해야 하며(민법 제61조), 법인과 이사



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는 대표권이 없으며(민법 제64조), 이사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민법 제65조).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하며(민법 제68조), 총회에서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하며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73조). 다만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민법 제74조).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 비치하여야 한다(민법 제76조).

그림 3. 사단법인의 구조



### 법인의 비영리성

주무관청이 법인설립을 허가할 때에는 ①법인설립의 필요성, ②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 ③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④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⑤정관의 필수사항 누락여부, 구비서류의 누락여부 등을 검토한다. 법인설립의 필요성은 설립목적, 비영리성, 목적사업이 공익을 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아울러 법인의 명칭, 목적사업 등이 주무관청 관련 법인이나 소관업무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다(법무부, 2014).

비영리성 판단의 경우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원의 필요만을 위한 비영리법인의 설립도 가능하다(향우회, 동창회 등).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에서 비용을 제한 이익이 구성원에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점이 ‘영리 아닌 사업’ 판단의 핵심이다. 비영리법인의 이익은 사업을 위해 다시 쓰이거나 법인에 축적되어야 한다. 따라서 재산의 모임이므로 이익을 분배할 구성원(사원)이 없는 재단법인은 언제나 비영리재단법인만 인정되며, 사단법인의 경우 이익분배를 위해서는 민법 이외에 상사법인의 규정까지 따라야 하므로 민법을 근거로 하는 사단법인은 반드시 ‘비영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법무부, 2014).



### 공익법인(公益法人)

통상 공익법인이라고 하면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모두 일컫는 경우가 많지만, 법률적으로 보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협의의 공익법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광의의 공익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법무부, 2014).

협의의 공익법인은 성격상 민법상 비영리법인과 유사하지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조건(비영리성 외에 공익성까지)을 갖추어 ‘공익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을 말하며, 광의의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의 규정에 따른 ‘공익법인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종교활동, 교육활동, 사회복지활동, 의료활동, 비영리문화·예술활동,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 기타 무료시설 운영 등을 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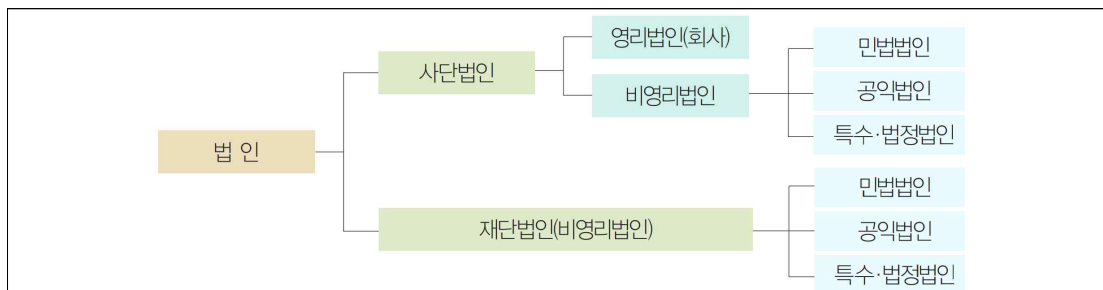
표 1. 민법상 비영리법인과 협의의 공익법인의 주요 차이점

비교	민법상 비영리법인	협의의 공익법인
이사회	임의기관	필수기관
감사	임의기관	필수기관
임직원	자유롭게 선임	정원수, 선임 등 주무관청의 승인 필요
수익사업	비영리 원칙하에 가능	주무관청 승인 필요
기본재산 처분	정관 및 총회에서 결정	주무관청 허가 필요
벌칙	과태료	징역·벌금

### 법인의 분류

민법에 근거한 법인 외에 다른 근거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도 적지 않다. 설립근거에 따라서 법인을 분류하면 상법법인, 민법법인, 공익법인, 특수법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법무부, 2014). 이 중에서 민법법인과 공익법인은 앞서 논의한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그림 4. 법인의 분류



자료 : 법무부(2014).



상법법인은 <상법 제3편 회사> 제169조 이하에 근거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가 이에 해당한다. <상법 제169조(회사의 의의)>에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법법인은 모두 영리법인이다.

특수법인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 각종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개념적으로는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도로공사,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LH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SH공사 등) 등 특수한 공공목적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도 포함된다.

### 협동조합(協同組合)

지금까지 논의한 비영리법인의 경우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경제주체의 설립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때 다소 번거롭다. 그래서 목적사업에 대한 법인세면제 등 세제혜택<sup>7)8)</sup>이 없는 걸 감수하며 협동조합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경제주체도 존재한다.

국제협동조합연맹(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ICA)은 1995년 100주년 기념 총회를 열고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협동조합이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를 일반적인 주식회사와 비교하면 ①투자자가 기업의 소유자이면서 이용자이며, ②1주1표가 아니라 1인1표(민주적 운영)의 의결권을 가지고, ③공통의 필요와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해 투자에 대한 배당보다 이용에 대한 배당을 우선시 한다(주식회사의 경우 이용에 대한 배당이 없다)는 차이점이 있다(기획재정부, 2013; 강세진 외, 2014).

한편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르면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이며(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1호), 법인이라고(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국제협동조합연맹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강세진 외, 2014).

7) 비영리를 추구하는 경우 민법에 따른 법인으로 결성하려는 이유는 사원이나 후원자의 재정적 기여를 기부금으로 처리하여 다소의 부담을 줄여 주려는 이유가 크다.

8)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에 민법 상 비영리법인이 포함되며,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만 과세되는 혜택을 받는다(법인세법 제3조).





### 협동조합의 비영리 운영

사단법인이 사원들의 모임이라면 상법법인, 즉 회사는 자본의 결합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회사 또는 기업의 운영구조는 추구하는 경제행위와 자본의 결합방식(구성 및 반환)에 의해 좀 더 정교하게 분류가 가능하다.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그 예이다. 협동조합도 마찬가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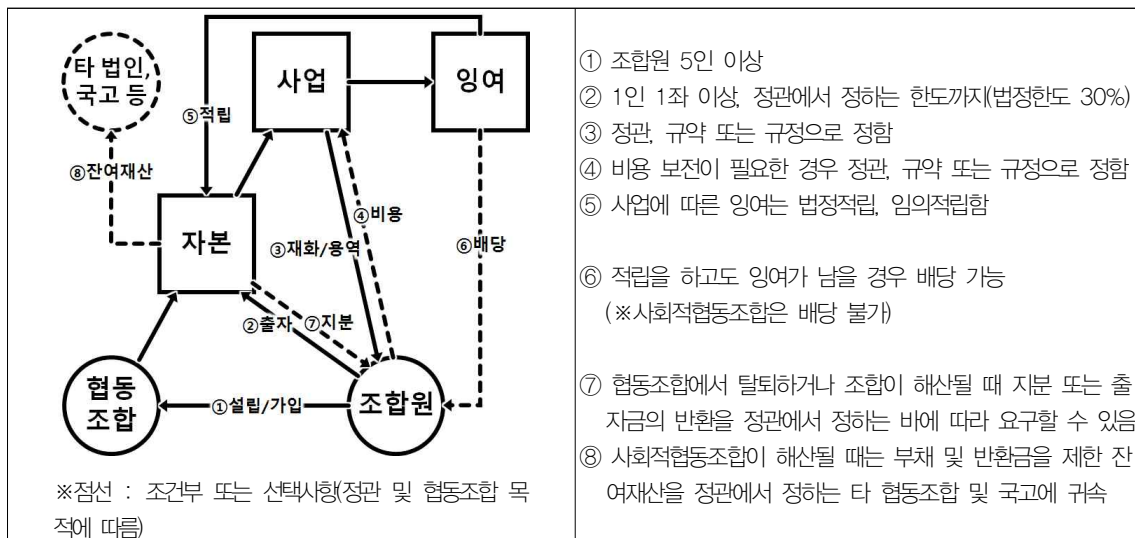
협동조합 역시 <상법>에 따른 회사들처럼 법인격을 갖춘 사업조직이므로, 그 운영구조는 ①목적으로 하는 경제행위(협동조합의 비용이며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편익), ②자본 조성(조합원의 협동조합에 대한 재정적 부담)의 명목·시기·규모, ③조성된 자본의 반환(조합원의 탈퇴 또는 조합해산) 방법 등에 따라 결정된다. 이를 <협동조합 기본법>에 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표 2, 그림 5와 같다(강세진 외, 2014).

표 2. 협동조합의 일반적 운영

구분	운영사항	관련규정
경제행위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동조합은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li> <li>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사업결과인 재화와 용역, 잉여금 배당이라는 편익을 얻을 수 있음</li> <li>정관, 규약 또는 규정에 따라 재화·용역의 비용을 그 재화·용역을 이용하는 해당 조합원이 부담할 수 있음</li> </ul>	기본법 16~17조, 45조, 51조
자본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를 통해 자본금을 모음</li> <li>협동조합은 사업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적립하여야 함</li> </ul>	기본법 18조, 22조, 50조
임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합원은 협동조합에서 탈퇴할 때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 또는 출자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음</li> <li>협동조합이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라 처분*·귀속**됨</li> </ul> <p>* 일반협동조합 : 조합원에 배분 가능 ** 사회적협동조합 : 타 협동조합 및 국고로 귀속</p>	기본법 26조, 59조, 89조, 104조

자료 : 강세진 외(2014).

그림 5. 협동조합의 일반적 운영구조



자료 : 강세진 외(2014).



법인에서 비영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구성원에 대한 잉여의 배당이므로, 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배당(⑥)을 하지 않는다면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의 사업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다. 즉 이익을 많이 남긴다는 것은 조합원 스스로 더 큰 비용을 지불하는 것과 같다(잉여의 크기 = ④조합원이 부담하는 비용 - ③을 제공하기 위한 원가비용). 그러므로 이론적으로는 협동조합의 경우 이익을 많이 남길 필요가 없다. 조합원 스스로에게 손해이기 때문이다. 물론 조합원 외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면 이익을 많이 남길 여지는 있다. 하지만 모든 소비자가 조합원이 되는 상황이 온다면 잉여는 최소화될 것이다.

### 상법법인의 자발적 이윤저감

식품회사A는 직원들을 쉽게 갈아치울 수 있는 부속품처럼 취급하기로 유명하다. 수익을 올리는 것이 우선이라서 국내에서는 땅투기나 일삼고 해외공장에서 환경오염원을 무단으로 배출하다 적발되었다는 소문도 들린다. 반면에 식품회사B는 A에 비해 매출 규모는 작지만 2년 전부터 비정규직 직원을 모두 정직원으로 전환하였고, 지속적으로 직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한다. 사회공헌에 투자도 많이 하고 골목상권을 힘겹게 지키고 있는 영세음식점들과 지역에서 고생하는 영세농업인에 대한 지원도 조금씩 늘려간다고 한다. 여러분은 회사A와 회사B 중 어느 업체의 라면을 구매하고 싶은가.

10여 년 전부터 경영계에 큰 화두가 되어 이제는 진심이든 홍보용이든 일반화된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은 “기업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주는 직·간접적 이해관계자들에 대하여 발생 가능한 제반 이슈들에 대한 법적, 경제적, 윤리적 책임을 감당할 뿐 아니라,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고 기회를 포착하여 중장기적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일련의 이해관계자 기반 경영활동”이라고 정의된다.<sup>9)</sup> 좋게 표현하면 ‘이윤을 사회적으로 다시 나누는 것’이고, 뼈뺌하게 보자면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좋은 이미지 쌓기’ 정도로 볼 수도 있다. 어쨌든 완전히 은폐할 수 있다면 모를까, 돈만 밝히는 자본가의 탐욕을 들키는 것이 경영에 좋은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에는 CSV(공유가치 창출; creating shared value)라는 개념도 확산되고 있다. 기업과 그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구성원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이익을 만들어야 한다는 경영개념이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서로 이기기 위해 경쟁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란 미개함에서 사회 전체를 고려하는 진보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음은 분명하다. 정부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등이 모두 같은 맥락일 것이다.

9) 중소기업 사회적책임경영 사이트 (<http://www.csr.go.kr/>)



## 맺음말

인식하든, 그러지 못 하든 우리 주변에는 무수히 많은 비영리가 존재하며, 그러한 활동이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근간이다. 모든 공공시설(도서관, 공원 등), 기반시설(상하수도, 도로 등),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공공임대주택 등의 비영리 영역이 갑자기 돈을 밝히는 영리로 돌변한다고 상상해보자. 일부 부자들을 제외하고는 심각한 경제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은 모든 인간은 이기적인 경제인이라고 떼를 쓴다. 돈 때문에 일을 한다고 주장하며, 부자들이 투자이익을 많이 거두어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무당처럼 주문을 외우고 있다. 이런 주장에는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으며 실제로도 증명된 적이 없다. 250년 전 애덤 스미스도 간파한 사실을 21세기의 첨단 IT기술과 분석패키지로 무장한 학자들이 애써 외면하고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이윤을 추구 것이 아니라, ‘생계’를 위해서 노동을 한다. 같은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전혀 다르다. 노동의 대가로 받는 것은 ‘생활임금’이지 이윤이 아니다. 이윤은 돈 놓고 돈을 먹는 불로소득이다. 이런 것을 투자라 부르며 조장하는 사회가 건실한 경제를 유지할 방법은 없다.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의 본질이다.

하지만 때때로 4년 늦춰질 것인가, 5년 앞당길 것인가의 싸움일 뿐, 비영리가 영리에 비해 분명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기에 사회와 경제는 비영리를 향해 끊임없이 진보할 것이다. 인간의 유전자가 우월성에 취해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였다면 지금의 문명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망가져가는 환경과 사회를 보면서, ‘어쩌면 그러는(인류문명이 없는) 편이 나았을 것’이라는 후회와 절망이 온 지구를 덮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비영리 진영이 충분한 우군을 얻기를 희망한다. 🐘

## [참고문헌]

1. 강세진, 진남영, 이상열(2014), “국의 주택협동조합 운영구조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9(2) : 209-228,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 기획재정부(2014), 「협동조합 설립운영 안내서-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 서울.
3. 김수행 역(2007), 「국부론. 상」, 서울: 비봉출판사.
4. \_\_\_\_\_, 「국부론. 하」, 서울: 비봉출판사.
5. 김수행(2013), 「청소년을 위한 국부론」, 서울: 두리미디어.
6. 법무부(2014),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공익 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 서울.
7. Maclurcan, D. and Hinton, J.(2013), “The Emerging, Not-for-Profit Economy,” *The Next Economy*, San Francisco: Sustainable Brands.  
(<http://www.sustainablebrands.com/>)



## 2016년 새사연 발간 보고서

2016년 3월 28일 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고용,노동	1/7	노동개혁, 노동자는 없고 기업만 있다	송민정
고용,노동	1/12	노동시장, 유연화보다 소비확대가 우선이다	새사연 노동경제팀
주거	1/15	2016 부동산 시장은 '위험한 균형' 유지할 것	권순형
정치	1/18	야당은 왜 존재하는가?	손우정
농업	1/25	농업의 지속가능성, '쌀' 과 '소득' 에 있다	장경호
주거	1/29	2016년에 대한 기대, 사회주택 활성화의 원년	강세진
복지	2/1	갈등의 복지, 불평등에 '응답하라'	최정은
고용,노동	2/5	지표와 정책으로 본 청년 고용의 현황과 과제	송민정
미디어	2/12	'사이비' 로 몰리는 인터넷 매체, 본질은 '여론 통제' 다	김시연
잇:북	2/18	2016 전망보고서	새사연 미디어센터
주거	2/25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 역할	강세진
복지	3/14	1인 가구, '전 연령' 의 문제다	최정은
주거	3/21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차인들의 협동조합 ① : 서울시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들여다보기	황서연, 진남영
사회	3/28	비영리경제주체의 의의와 사례	강세진